

#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요구의 부당성

A Bad Claim of Construction Enterprise

李鍾寬/본 협회 홍보위원장

by Lee, Chong-Kwan

자연생태계에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개개의 생명체는 지구라는 한정된 환경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생존경쟁, 다시 말해 정글의 법칙에 규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떤 형태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연생태계를 이루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서로 먹고 먹히는 경쟁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큰 자연의 순리, 즉 각 種간의 먹이사슬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의 지나친 파괴를 지양하고 자연의 조화로운 법칙을 본능적으로 유지하려는 질서에 따른 것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먹이를 얻더라도 최소한의 한계가 생태계내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의 種인 우리 인간도 이러한 자연생태의 생존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근본적인 파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인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자연의 순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면서 브레이크 없는 정글논리에 사로잡혀 스스로는 물론 타인 마저도 파멸로 몰고가는 이가 많은 것 같다.

최근 우리 건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관련된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행태는 자연의 질서에 준하는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무절제한 탐욕의 좋은 예라 여겨진다. 紙上을 통해서도 누차 거론되었지만 한국건설업체연합회가 요구하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의 요지는 이렇다.

오는 97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완전개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건설업체들이 외국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부터 현재의 건설업면허제를 종합화하여 국내건설업체의 실질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종합화 방안으로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업종과 업역,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건설업면허체계를 종합건설업면허제로 일원화해야 하고 종합건설업면허가 어려울 경우에는 건설관련업체별로 능력에 따라 종합적인 건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우리 건축사의 업무와 연관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현재의 국내 건설업면허체계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프로젝트개발 등 다양한 건설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시장개방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건설업종합화 방안과 종합건설업면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UR타결로 예상되는 외국건설업체에 대응한 국내시장의 보호와 국내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건설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주장에 우리는 적극 동조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건축사법 개정을 통한 종합화만이 대안인 양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는 심각히 숙고해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법개정은 법자체가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의 법개정일지라도 최소한 입법의 기본정신을 보호,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단기적인 긍정효과만을 노려 무리하게 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종합건설업면허제도를 위한 건축사법개정요구는 건축설계, 감리를 시공과 분리하여 서로 견제와 감시를 통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건축문화를 추구한다는 건축사법 입법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형자본의 힘을 무기로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전문업역으로서 건축사의 설자리를 빼앗으려는 오만에서 나온 논리임을 지적하면서 이 주장의 허구성을 헤쳐보고, 건축·건설업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건축문화의 발전도 물론이거니와 역사이래 인간이 이룩해 온 찬란한 문명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조들의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경쟁에서 이루어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은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매개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협업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의 틀을 흔든다면 이것은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파멸을 위한 경쟁일 뿐이다.

정글의 법칙을 따를지라도 결코 그 범위와 한계를 넘지 않는 자연생태계의 법칙이 주는 교훈을 아는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지혜가 아쉽다.

”

먼저, 현 제도에서도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대표로 내세워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면 자체적으로 설계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도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종합화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 국제경쟁력 배양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업체가 내세우는 이 주장은 단순히 국내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법개정의 명분이 결코 될 수는 없다.

건축사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정보교환과 상호지원 등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이 경쟁력확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한다.

일례로 우리가 개방화에 대비하여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의 Bechtel, Parsons Group 등 세계적 회사들도 사실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대규모 CM(Construction Management)회사로서 건축설계는 건축사사무소, 시공은 시공회사를 선택해서 콘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건연의 주장을 보면 국내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하여 외국건설회사와 경쟁을 할 때 설계, 시공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경쟁에 뒤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업에 진출할 경우 국내 건축사면허가 전혀 필요없는 실정이며, 건설업체가 국내 건축사면허를 갖지 않더라도 외국업체와의 경쟁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체가 건축사법개정을 통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속셈은 금년초 설계·감리요율이 현실화되어 국내설계 시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공과는 독립된 설계분야 마저도 흡수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취하자는 의도에 불과하다.

사실 건축시장의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하여 국위를 선양하기를 원하는 건축사는 해외진출에 따른 각종 국내 제도가 건설시공회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처지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건설의 소프트웨어 분야로서 건축사의 전문업역인 설계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건설시공회사가

일변도의 해외진출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은 계획에서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고, 각 단계는 자체의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가발전해 가고 있다.

즉, 각 과정에서 얻는 개별작업의 성과물은 다음 작업에 반영되어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지 타분야에 반영되어 그 분야를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종합화의 상승효과로 거론하고 있는 시공과정에서 획득된 시공 성과물은 시공의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술향상에 활용될 사항이지, 설계에 반영되어 설계의 발전을 주도할 만큼의 효과는 구조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염연히 설계는 설계자체의 순환구조에 의해 기술축적을 통한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설계분야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건축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 노-하우를 존중하고, 육성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이 설계자체의 기술력 향상과 건축·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다.

건축문화의 발전도 물론이거니와 역사이래 인간이 이룩해 온 찬란한 문명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조들의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경쟁에서 이루어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은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매개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협업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의 틀을 흔든다면 이것은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파멸을 위한 경쟁일 뿐이다.

정글의 법칙을 따를지라도 결코 그 범위와 한계를 넘지 않는 자연생태계의 법칙이 주는 교훈을 아는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지혜가 아쉽다.